

포상에 따른 세부시행규칙

제 1 조 (목 적) 이 규칙은 학칙 제 43조에 의한 포상에 따른 세부시행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포상) 학칙 제 4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1. 학업우수상

가. 대학 2~3년간 학교에서 학업이 최우수한 자 및 각 학과에서 학업이 우수한 자

나.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각 학과에서 학업이 우수한 자

2. 모범상 : 타 학생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

3. 공로상

가. 학교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도력이 탁월하며 학생자치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자

나. 체육을 통하여 학교 명예를 높인 자

다. 각종 국가고시나 학술대회에 합격·입상한 자

4. 기타 포상의 의의가 인정되는 자

5. 전호 2,3호에 해당되는 포상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직접 포상할 수 있다.

6. 포상부분 및 선정기준은 별지 제 1호, 학업우수상 상장 문안은 별지 제2호에 의한다.

제 3 조 (학업우수자 선정기준) 학교에서 학업이 최우수한 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

1. 각 계열에서 윤번제로 매년 학업우수한 자를 1명 선정하되, 계열별 순서는 다음과 같다.

가. 순서 : ①간호계, ②보건계, ③사회실무계, ④공업계, ⑤가정계 및 예체능계

나. 1998년 2월 수상 계열은 보건계열로 한다.

2. 계열별 학과에서 학업우수자를 선정 시는 해당 학과들의 합의에 의한다.

제 4 조 (업무담당) 교내 포상의 경우는 교무처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, 교외 포상의 경우에는 학생복지처에서 담당한다.

제 5 조 (기 타)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한라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(규정개정)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.(규정 개정)
(학장, 부학장 → 총장, 부총장으로 명칭 변경)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 (규정개정)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0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 (규정개정)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포상부문 및 선정기준

포 상 부 문		선 정 기 준	수여자	비 고
학업우수상	최우수	대학 2~3년간 학교에서 학업이 최우수한 자 주·야간 각 1명 선정	이사장	상장, 상품
	우 수	학과에서 학업이 우수한 자 학과별 주·야간 각 1명 선정	총 장	"
공 로 상		1. 총학생회장 역임자 2. 총대의원회의장 역임자 3. 2부 학생회장 역임자 4. 권위있는 각종 학술대회 입상자 5. 권위있는 각종 국가고시 최종합격자 6. 단체종목 체육특기자는 재학시 주전으로 전 국 규모대회에 출전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7. 개인종목 체육특기자는 재학시 전국 규모대 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자 8. 기타 포상의 의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	총 장	공로패
모 범 상		타 학생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 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	총 장	상장, 상품

학교 전체 학업 최우수상 상장 문안

제 호

상 장

학과

성명
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재학기간 중 학업성적이 본 대학교에서
최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
이 상장을 드립니다.

20 년 월 일

학교법인 한라학원 이사장
의 학 박 사 김 병 찬

학과학업우수상장문안

제 호

상 장

학과

성명
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재학기간 중 본 대학교 과에
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
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.

20 년 월 일

제 주 한 라 대 학 교 총 장

경영학박사

김 성 훈